

의정부지방법원 2024. 4. 5 선고 2023나96 판결 [부당이득금 반환]

재판경과

의정부지방법원 2024. 4. 5 선고 2023나96 판결

의정부지방법원철원군법원 2023. 1. 12 선고 2021가소415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주식회사 A

피고, 항소인B

변론 종결2024. 3. 5.

판결 선고2024. 4. 5.

제1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철원군법원 2023. 1. 12. 선고 2021가소415 판결

주문

- 이 사건 소송은 2023. 12. 8. 피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.
-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-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25,000,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구함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구함.

이 유

1. 사실의 인정

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.

가. 이 사건의 제1심판결은 2023. 1. 12. 선고되었고, 피고는 2023. 2. 1.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다.

나. 이 법원은 제1차 변론기일을 2023. 9. 12.로 지정하였고, 위 변론기일에 대한 변론기일통지서가 2023. 7. 19. 피고에게 송달되었다. 피고는 위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였고, 이 법원은 같은 날 법정에서 제2차 변론기일을 2023. 10. 10. 15:00로 지정하여 법정에 출석한 피고에게 이를 고지하였다.

다. 피고는 2023. 10. 5. 위 변론기일에 대한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, 이 법원은 이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는바, 위 제2차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.

라. 이 법원은 제3차 변론기일을 2023. 11. 7. 15:10으로 지정하였고, 위 변론기일에 대한 통지서가 2023. 10. 13. 원고와 피고에게 각각 송달되었다. 피고는 2023. 11. 2. 다시 위 변론기일에 대한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, 이 법원은 이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는바, 위 제3차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.

마. 그 후 피고는 2023. 12. 15. 이 법원에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, 이 법원은 피고의 위 변론재개신청서를 기일지정신청으로 보아 2024. 3. 5. 10:50으로 변론기일을 지정하였다. 피고는

위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위 제3회 변론기일 이후 1개월을 경과하여 기일지정신청을 한 사유에 관한 특별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.

2. 판단

민사소송법 제408조, 제268조에 의하면, 항소심 소송 계속 중 양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인은 다시 그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여야 하고, 만약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.

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할 때, 항소인인 피고가 제2, 3차 변론기일에 각 불출석하였고, 제3차 변론기일인 2023. 11. 7.부터 1개월 이내인 2023. 12. 7.까지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, 이 사건 소송은 2023. 12. 8.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음에도 피고가 그 효력을 다투는 취지로 변론재개신청의 방법으로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므로, 민사소송규칙 제128조, 제68조, 제67조 제3항에 따라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 김춘호

판사 박광우

판사 황병헌